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9. 김한규의원 등 22인

나. 회 부 일 자 : 2026. 7. 9.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09.)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0.)

상정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3.)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5.)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6.)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2.)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3.)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4.)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6. 7. 29.)

상정·대체토론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7. 29.)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한규의원)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과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

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 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09.)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